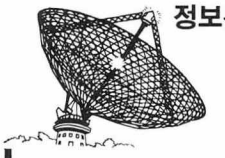

정보통신안테나

공포

- 전기통신기본법중 개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공고

- 주파수 공용통신허가지침중 자가 및 통신사업용 주파수변경 시행
-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업무 처리지침

건의문

- 정보산업 업종의 공장등록증 징구방침 철회건

공포

⊙ 대통령령 제14,226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일 94.4.30)

1. 개정조항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2조(자가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대상) 제1항 1호, 제2항 7호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8조(목적외 사용의 특례) 제2호
   - 부칙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중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와 감독청 사이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여 그 설비의 설치를 쉽게 하려는 것임.

⊙ 체신부령 제870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일 94.5.9.)

1. 개정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 부칙

2.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중 특정통신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의 통신위원회 심의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통신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부가통신사업자가 데이터단순전송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온라인 정보검색·처리역무 또는 부가가치통신역무와 병행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데이터단순전송역무만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3호 다목)
- 특정통신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종전에는 무선데이터통신역무중 일부 역무의 경우에만 통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선데이터통신역무 모두에 대하여 통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무선데이터통신역무에 대한 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제12조)
- 부가통신사업의 등록기준중 재정에 관한 기준을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법인중 주식회사외의 법인과 개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별표 2)

공고

⊙ 체신부 공고 제1994-73호

주파수공용통신허가지침중 자가 및 통신사업용 주파수 변경 시행 (공고일 94.5.3.)

1. 이용 주파수대 추가

구 분	현 행	변 경
자가통신용	806-811/851-856MHz 200채널	806-811/851-856MHz 200채널 371.5-376.5/389.5-394.5MHz 400채널
통신사업용	811-821/856-866MHz 400채널	811-821/856-866MHz 400채널 376.5-381.5/394.5-399.5MHz 400채널

※ K-note 변경

현 행	변 경
K70 256-265MHz, 322-328.6MHz, 371.5-381.5, 389.5-399.5MHz, 425-426MHz의 주파수대는 전기통신역무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K70 256-265MHz, 322-328.6MHz, 425-426MHz의 주파수대는 전기통신역무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K70A 371.5-381.5, 389.5-399.5MHz의 주파수대는 주파수공용통신(TRS)에 사용한다.

2. 주파수공용통신허가지침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적 용 범 위	800MHz대 주파수 공용통신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사항	주파수공용통신 무선국개설에 필요한 사항
기 술 적 조 건	- 자가통신용 : 806-811/851-856MHz 200채널 - 통신사업용 : 811-821/856-866MHz 400채널	- 자가통신용 : 806-811/851-856MHz 200채널, 371.5-376.5/389.5-394.5MHz 400채널 - 통신사업용 : 811-821/856-866MHz 400채널, 376.5-381.5/394.5-399.5MHz 400채널

3. 시행일 : 1994.5.1(단, 380MHz대 주파수공용통신 무선국 허가는 관련 기술기준 정비후부터 가능함)

⊙ 한국통신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업무 처리지침

1. 목적

한국통신의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및 구매계획을 예시함으로써 소프웨어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통신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업무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요예보 대상 소프트웨어

가.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 통신시스템 분야

○ 통신망을 구성하는 통신시스템의 통신망 기능발휘를 위한 S/W

- 교환, 전송, 단말, 집중보전, 통신망관리시스템 등 S/W

□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 각종 정보의 제공, 교환, 처리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W(하이텔 DB제외)

- 비디오/오디오텍스, CATV, 영상회의, VAN, EDI 등 S/W

□ 업무전산 분야

○ 경영관리, 영업관리, 시설관리, 사무자동화 등을 위한 S/W

- 기획, 인사, 재무, 물자, 영업, 시설, 요금, 고객, 급여관리 등 S/W

□ 공통기반 분야

○ 응용 S/W의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S/W

- S/W지원기술 : 전산시스템간 연동, 운용표준 환경구축, 종합정보망 구축 기술 등 S/W
- S/W생산 및 보증기술 : CASE, 표준화, 재사용, 품질보증기술 등 S/W

나. 대상기준

□ 해당사업 또는 계획이 확정된 S/W로서 단가 100만원 이상인 S/W중 경쟁입찰에 의한 것을 대상으로 함. 단, 한국통신의 영업기밀을 침해하거나 경영관리상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및 기술적으로 자사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제외함.

3. 수요계획 수립 및 예보

가. 부서별 계획수립 및 일정

1) 정기예보

○매년 1회 당해년도 용역개발 및 구매계획을 예보

- 수요부서는 1.10일한 당해부서 계획을 수립. 관리부서 통보
- 관리부서는 1.20일한 당해부서 계획을 수립. 총괄부서 통보
- 총괄부서는 1.31일한 한국통신 계획을 수립. 확정 체신부, 사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으로 통보

2) 부정기 예보

○기예보된 계획 변경 및 추가 수요예보 사항 발생시

- 수요부서에서는 발생즉시 관리부서로 통보
- 관리부서에서는 매분기 익월 10일한 당해기관 해당사항(사항이 있을시)을 총괄부서로 통보
- 총괄부서에서는 매분기 익월 20일한 한국통신 해당사항(사항이 있을시)을 사외기관으로 통보

※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사외기관으로 수요예보 및 분기 보고서, 그 내용을 총괄부서로 통보

나. 수요예보 내용

○수요예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주의사항

- 소프트웨어 명칭
- 개발내용 또는 구매내용
- 개발기간
- 계약체결 예정용 또는 구매예정일
- 개발 예정가격 또는 구매 예정가격
- 기타 수요부서명 및 연락처 등

○예보내역은 가급적 변경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시행전 수정예보

다. 수요예보 방법

○관보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지 등에 게재하여 예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체신부, 사외기관)

○사외기관은 한국통신의 예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자료화하고 예보내용 문의에 상세히 응해야 함.

라. 소요예산 편성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적정 보상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함

건의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산업업종의 공장등록증 징구방침 철회건

(상공자원부, 병무특례위원회에 건의 94.5.4)

1. 요지

병역특례기업 선정시 무등록공장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 있어 정보산업 분야(전자분야중 6개종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징구는 주지하다시피, 공장등록이 요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그 특성상 정보산업을 여타 제조업과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동 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징구철회와 지속적으로 병역특례 업종으로 적용시켜 줄 것으로 건의함.

2. 배경

1. 병역특례심의위원회('94.3.15)의 무등록공장에 대한 신규지정업체의 선정 및 기존업체의 처리방안 심의에서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조치 내용을 상공자원부에서 관련단체에 통보.

2. 공장등록증 징구는 정보산업에 대하여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일반제조업체와 동일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범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경쟁적 정보산업 육성정책 및 정부차원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관련 정책들과 위배되는 것으로서 정보산업 분야를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배정)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우려됨.

3.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제1호(특례업체 신정범위)에서 정보산업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그나마, 부족한 고급기능인력을 정보산업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지원제도조차 없애는 결과임.

4. 이에 따라, 본 협회는 공장등록증 제출기준의 무차별적용은 정보산업이 제조업은 아니나,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제조업 이상의 각종 행정·세제·금융 등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과 특례업체선정 범위에 포함되었던 배경을 고려하여 동 산업 분야에 대하여 병역특례업종 계속 적용을 요망하는 전 정보산업 업계를 대표하여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병무청회신

1.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할 때는 산업 입지가 국토이용계획, 환경보전 등 다른 국가정책 목표와도 부합되어야 하나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곳(무허가 건물 등)에서 조업중이거나 공업배치법상 공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등 관련 법령 준수를 하지 못한 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는 것은 각 부처의 정책 수행의 일관성 등 국가 목적 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2. 따라서, '94.3.15.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지정업체 선정시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고 기존 업체중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익년도 산업 기능요원 배정을 제한하고, 공장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인원을 배정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업분야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공장등록을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처리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정보산업관련 업종

분 야	코드번호	신 청 대 상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및 세제분류)
전자	4	7210 컴퓨터설비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0 자료처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업
		7250 사무, 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보수
		7290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